

의안번호	2200903
의 퇴 인	임오경 의원
회 답 일	2024.07.11.
추계번호	24C1118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0조의2 (학교의장및교원의 학생생활지도)	(제1항)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. (제2항)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「아동복지법」 제17조제3호,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. (제3항) <u>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u> ※ 제3항 신설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규정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0조의2 (학교의장및교원의 학생 생활지도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으로 하여금 ‘학생생활지도’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, 구체적 정책방안 및 소요예산 등에 대한 추정이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
- 교원의 생활지도권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0조의 2와 동 법 시행령 제40조의 31), 「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」 및 학교규칙(학칙) 등에 규정됨

- 교육부에서 보급한 「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」 해설서(2023.9.)에 따르면, 법령에 규정된 교원의 생활지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행정주체별로 업무를 분담하고 있음
 - 교육부 : 제도개선 및 법령 제·개정, 법령·고시 적용상의 해석·질의 답변지원 등
 - 시·도교육청 : 지침 등 현장 적용 및 연수지원과 생활지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갖추어야 할 제반 학교여건(분리장소, 지원인력, 비상 연락 시설 등)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및 추진
 - 학교장 : 현장에서 필요한 제반지원 사항에 대한 수시점검 및 지원, 학교구성원 대상 고시 내용 홍보 및 교육·연수추진, 단위학교 총괄책임자로서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지도대책 수립 등
-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2024년 현재 학생생활지도를 위한 인력·시설 등 외에 추가 지원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으나²⁾, 현시점에서 구체적 지원의 규모 및 소요비용 등을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으며, 이에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-
- 1)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40조의3(학생생활지도)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, 상담, 주의, 훈육·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. 이 경우 도구,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.
1. 학업 및 진로
 2. 보건 및 안전
 3. 인성 및 대인관계
 4. 그 밖에 학생생활과 관련되는 분야
-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의 범위,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.
- 2) **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는** 교육부가 교원 보호를 위한 학교·교육청 지원을 강화할 계획을 밝혔으나 이에 **필요한 예산, 인력, 시설 등의 지원이 아직 부족한 상황임**을 밝히고 있으며, 이에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이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**교육활동 및 교권 보호 강화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한다**는 점을 명시하고 있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정혜승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정혜승	02-6788-4627	hs0387@assembly.go.kr